



서울신용보증재단

수 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 목 감사사무처리기준 개정 (안)

피감사자의 항변권 강화 및 재심의회 설치에 따른 세부운영사항을 정하고자
「감사사무처리기준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.

- 붙임 : 1. 감사사무처리기준 개정(안)
2. 감사사무처리기준 개정 후 전문 (안). 끝.

★감사역 이혁제 실장 신용호 이사장 05/17
한종관 韓

협조자

감사실장 감사실 감사번호

시행 감사실-262 (2019.05.17.) 접수 ()
우 04130 서울시마포구 마포대로 163 (공덕동) / <http://www.seoulshinbo.co.kr>
전화 02)2174-5051 /전송 02)3278-8111 / redcarpet@seoulshinbo.co.kr / 공개